

## 해양오염에 관한 고찰 (II)

한국어선협회 기술개발부  
주임기술원 이영섭

### 1. 해양오염방지법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79호로 제정되었고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 3531호로 1차 개정되었다가 다시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 3905호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1986년의 개정이유는, 1984년 7월 23일 우리나라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1973 및 1978 MARPOL PROTOCOL)”를 수락하고 우리나라의 발효일을 1984년 10월 23일로 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 기준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선박의 기름배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름의 범위를 종래의 원유, 중유, 윤활유 등 중질유로 국한하면 것을 앞으로

는 그외에 휘발유, 경유, 중유 등 경질유를 추가하여 규제대상 기름의 범위를 확대함.

- 선박의 기름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선박내에 선저폐수배출장치만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외에 물밸러스트 탱크, 화물창 원유세정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함.

- 선박소유자는 선박내에 설치한 해양오염방지장치에 대하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를 각각 받도록하고 그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동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은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 기름 기록부, 폐기물 처리기록부의 비치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위반자의 전과자화(前科者化)를 막고, 행정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이러한 취지하에 개정되어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선박과 접종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 해양오염방지법의 구성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

은 8장 55조와 7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적용배제**

**제 2장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금지, 해양오염방지장치의 설치, 오염방지관리인, 기름 기록부, 적용제외,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 변경신고, 등록의 취소, 폐기물의 처리기록부 등**

**제 2장의 2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검사 등 - 검사,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교부,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의 교부, 검사대상선박의 항행 등, 검사의 대행, 부적선박에 대한 조치, 협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한 협약증서의 교부 등,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 3장 해양시설로 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 해양시설로 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금지, 해양시설의 설치등록, 오염방지 관리인**

**제 4장 폐유처리사업 등 - 사업의 허가, 허가의 결격사유, 사업개시의 신고, 폐유의 수거처리 등, 폐유처리 시설의 유지 폐유처리시설의 조업정지**

등,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사업허가의 취소, 자가폐유처리시설,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 5 장 해양오염 방제조치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자재 및 약제의 비치, 폐기물 등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비용의 부담, 재산의 처분

#### 제 6 장 분쟁조정 및 피해배상

분쟁의 조정신청,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지명, 사실조사 등, 조정위원회의 의무, 조정효력, 피해배상

보조-폐선의 규제, 관계기관의 협조, 출입검사 및 보고 등, 해양환경감시원, 기름기록부 사본의 제출, 정선, 검색, 나포 등, 해역의 관리, 해역별 수질기준, 연안오염의 방지, 국고보조, 해양오염방지심의위원회, 해양오염방지장치 차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 등, 청문, 관계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수수료, 권한의 위임, 부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협의

#### 제 8 장 벌칙-벌칙,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등, 양벌규정,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擬制)

부칙-시행일(1987년 7월 1일), 해양시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오염방지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피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검

정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 나. 해양오염방지법 중 어선에 관련된 사항

##### 1) 어선의 법적 지위

해양오염방지법은 제 1 장 제 1 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라고 선박에 대하여 제일 먼저 지목하고 있고, 제 2 조 5 항에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되는 선주류(船舟類)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6 항에는 따로이 유조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선이라도 이 법에서는 적용제외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박이 적용받는 내용인 제 2 장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의 제 9 조 1 항에 적용 제외되는 선박이 나타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 2 장 제 5 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적용 제외의 선박 : 법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6 조, 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다.

- 법 제 6 조 제 1 항 중 선저 폐수배출방지장치의 설치에 관한 규정 : 총톤수 50 톤 미만의 유조선 및 유조선외의 선박으로 총톤수 100 톤 미만의 선박

- 법 제 6 조 제 7 항 중 물밸러스트 배출방지장치, 분리밸러

스트 탱크, 화물창 원유세정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 : 유조선외의 선박 및 총톤수 150 톤 미만의 유조선과 총톤수 150 톤 이상의 유조선 중 분리밸러스트 탱크, 화물창 유세정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선박

- 법 제 7 조 및 법 제 8 조의 규정 :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 미만의 선박

이상의 설명외는 선박의 규정을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은 총톤수 100 톤 미만의 어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오해로 인한 범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2) 어선이 지켜야 할 사항

동 법의 제 2 장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에 나오는 항목중에서

- 제 5 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금지)

①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기름의 배출

○ 선박의 순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에 의하여 기름이 배출된 경우에 계속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의 배출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은 선박에 있어서 배출되는 기름중의 유분이 100 만분의 15 미만이거나 다음 각호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조선에 있어서는 선저폐수에 한한다.

- 선박이 항행중일 것
- 유분의 순간배출율이 1

해리당 60 리터 이하일 것

○ 배출되는 기름중의 유분이 100 만분의 100미만일 것

○ 기름의 배출은 육지 또는 도서로부터 12 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행하여질 것

○ 기름의 배출중에는 제6조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장치 중 농립수산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장치를 작동시킬 것

③ 유조선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④ 물밸러스트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세정도(洗淨度)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6 조(해양오염방지장치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선박이 임대되어 있을 때에는 선박임차인)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선박에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저폐수배출방지장치, 물밸러스트 배출방지장치, 분리밸러스트 탱크, 화물창 원유세정설비 등(이하 “해양오염방지장치”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장치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장치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하고 작동하여야 한다.

— 제 6 조의 2(물밸러스트 또는 기름의 적재 제한)

①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밸러스트 탱크를 설치한 유조선의 화물창과 공동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 탱크에는 물밸러스트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선수탱크와 충돌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 조의 3(선박내 오염물질의 처리)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슬롭, 선저폐수, 물밸러스트, 유성혼합물 기타 오염물질은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박내에 저장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폐유처리시설,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 7 조(오염방지관리인)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마다 그 선박의 승무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폐기물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업무내용,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 8 조(기름기록부)

① 선장은 기름기록부를 선박내에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기재사항,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 9 조(적용제외)

① 제 6 조, 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 7 조의 규정은 선박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 이외의 선박에 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0 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①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폐기물의 배출

○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에 의하여 폐기물이 배출된 경우에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

### 기는 폐기물의 배출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은 선박내에 있는 선원과 승객 등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항은 해당되지 않음

### 3)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검사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검사에 해당하는 이항은 개정법에 대 폭적인 삽입항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의 “제 2 장의 2”로 삽입하고 제 14 조의 2에서 9까지로 나열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된 법,령, 규칙들과 관련으로 불가피한 인상을 남기나 언젠가는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제 14 조의 2 (검사)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 소유자는 당해 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장치에 대하여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행하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 : 해양오염방지장치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행에 사용하고자 한 때 및 제 14 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 임시검사 : 제 6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해양오염방지장치를 교체, 개조 또는 수리를 한 때 행하는 검사

○ 임시항행검사 : 제 14 조의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

#### － 제 14 조의 3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교부)

①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제 1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의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 제 14 조의 4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의 교부)

①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제 1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선박소유자로 부터 당해 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제 14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로 본다.

#### － 제 14 조의 5 (검사대상선박의 항행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선박소유자는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증서,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증서”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해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제 1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장치에 대한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 5 조 제 1 항(어선인 경우에는 어선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을 교부받은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내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 제 14 조의 6 (검사의 대행)

①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제 1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 14 조의 7 (부칙선박에 대한 조치)

① 수산청장 또는 항만청장은 해양오염방지장치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 14 조의 8 (협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한 협약증서의 교부 등)

① 검사대상선박의 대한 민국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의정서(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외국(이하 “협약당사국”이라 한다)의 정부로부터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에 상당하는 증서(이하 “협약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국 주재 대한민국의 영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협약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당해국의 선박에 대하여 협약증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제

1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상당하는 검사를 행하고 당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협약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증서는 제 14 조의 4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로 본다.

— 제 14 조의 9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 만료후 5월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을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3) 기타

법 제 5 장 해양오염방제조치에서는 법 제 26 조(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로 “대량의 기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때는 배출된 기름이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선장은 기름이 배출된 일시 및 장소, 배출된 기름의 양과 확산되는 상황, 배출된 기름이 적재되어 있던 선박을 자체없이 내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를 낸 어선의 경우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제 28 조(자재 및 약

제의 비치)에서 선박에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재 및 약제의 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재 및 약제의 종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스스로 방제치 못하였을 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방제조치에 소유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천재, 지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그려하지 아니하는 법 제 30 조(비용의 부담) 항은 선주가 알아야 할 것이다.

제 7 장 보칙, 법 제 38 조는 폐선의 규제에 관한 것으로 “누구든지 선박을 해역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버리는 경우 또는 제거하기 곤란한 조난선박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또한 선박을 해철하고자 하는 자는 해철 및 이와 관련된 작업과정에서 기름 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선을 인공어초로 사용하거나 방치 또는 해체할 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차기 호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별칙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